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9-02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5344357 부당이득금 반환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주○○, 이○○
피 고	1. ○○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2. ○○도
	소송대리인 B
변 론 종 결	2024. 2. 1.
판 결 선 고	2024. 5. 9.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시는 37,647,110원 및 그중 11,141,035원에 대하여는 2017. 11. 25.부터 2022. 12. 8.까지 별지1 적용이율란 기재 비율의, 11,363,143원에 대하여는 2018. 12. 4.부터 2022. 12. 8.까지 별지1 적용이율란 기재 비율의, 6,981,906원에 대하여는 2019. 12. 3.부터 2022. 12. 8.까지 별지1 적용이율란 기재 비율의, 7,282,730원에 대하여는 2020. 12. 8.부터 2022. 12. 8.까지 별지1 적용이율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9-02

기재 비율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도는 5,256,360원 및 그중 2,272,628원에 대하여는 2018. 12. 4.부터 2023. 9. 13.까지 별지1 기재 적용이율란 기재 비율의, 1,396,382원에 대하여는 2019. 12. 3.부터 2023. 9. 13.까지 별지1 적용이율란 기재 비율의, 1,456,546원에 대하여는 2020. 12. 8.부터 2023. 9. 13.까지 별지1 적용이율란 기재 비율의, 각 그 다음날부터 2024. 5. 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도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시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도 사이에 생긴 부분의 2/7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도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시는 37,647,110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2 목록 기재 각 지연손해금율로 계산한 돈[1]을, 피고 ◯◯도는 7,529,420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3 목록 기재 각 지연손해금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주문 제1의 가항과 같다. 별지2 기재 2022. 12. 8.은 2022. 12. 9.의 오기로 보인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9-02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과거 염전개발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7. 7. 13.경 염전개발업을 폐업한 법인인데, 피고 ○○시의 관할구역 내에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피고 ○○시는 위 과세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귀속주체이고, 피고 ○○도는 지방교육세의 귀속주체이다.

나. 원고는 1973. 12. 20. 염(함수) 제조허가를 받은 후 1987. 4. 29. 염(함수) 제조허가 변경허가를 받아 염전을 운영하다가 1996. 7. 18. ○○시장에게 염전사용 폐지신고를 하였다. 허가 당시 염전의 설비면적은 염전 4,453,027㎡, 저수지 518,720㎡, 기타 494,648㎡이었다.

다. 피고 ○○시는 원고가 피고 ○○시 관할에 소유한 재산세 과세대상토지에 대하여 2017년 내지 2020년 귀속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고지하였고, 원고는 고지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다.

라. 위 재산세 과세대상토지에는 다음의 [표1] 기재와 같은 피고 ○○시 소재 5건의 토지들(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건 토지들은 염전으로서의 사용이 폐지된 후 방치되어 자연적으로 갈대밭이 형성된 채로 방치되어 있고, 위 나.항 기재 설비면적 중 '기타 494,648㎡'에 포함되어 있다.

[표1]

순번	소재지	지목	면적	비고
1	○○시 C	잡종지	22,247㎡	
2	○○시 D	잡종지	1,221㎡	
3	○○시 E	잡종지	1,169㎡	
4	○○시 F	잡종지	40,351㎡	전체 40,841㎡에서 경작토지 490㎡를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9-02

				제외한 부분
5	◯◯시 G	잡종지	2,901㎡	전체 5,111㎡에서 경작토지 2,210㎡를 제외한 부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시는 이 사건 토지들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고지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들은 염전시설의 일부로 사용되다가 1997. 7. 18. 염(함수) 제조업허가폐지 신고가 수리되면서 염전으로서 사용이 폐지되어 2017. 6. 1. 이전부터 현재까지 '과거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이하 '폐염전'이라 한다)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호[2]의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계속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원고는 분리과세대상토지인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합산과세대상인 것을 전제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받아 과오납세액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위와 같은 과오납세액 부분에 관한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위와 같은 과오납세액 부분은 당연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시는 초과납부 재산세액 37,647,110원, 피고 ◯◯도는 초과납부 지방교육세액 7,529,420원 및 각 이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2) 자세한 규정은 [별지4] 기재 관련 법령과 같고, 현행 지방세법 제106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9-02

[별지4]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참조).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과세처분의 효력 유무

1)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들은 폐염전으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피고 ○○시가 이 사건 토지들을 실제 현황에 대한 조사 없이 지목이 잡종지라는 이유만으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였고, 그와 같이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에는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은 하자가 있고,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9-02

그 하자는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이고, 원고가 초과납부한 재산세액 및 지방교육세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가) 구 지방세법 제106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호[3]는 재산세의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면서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계속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다만 염전 사용을 폐지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는 제외)는 분리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6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1호[4]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고 한다) 제67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7호 본문은 '염전'을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製鹽場)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정의하는데, 이 사건 토지들은 지목은 잡종지였으나 자연증발지, 저수지 등과 인접하여 소금의 운반·저장 또는 수로로 이용되던 토지들이므로 위 공간정보관리법에서의 염전의 개념 중 '부속시설물의 부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후 염전이 폐지되고, 갈대밭이 무성한 채 방치되었으므로, 구 지방세법령 및 지방세법령이 규정하는 폐염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호, 제2호[5]는 '재산세는 과세대상 물건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3) 2017년 귀속 재산세 및 지방세 부과처분에 적용
4) 2018년~2020년 귀속 재산세 및 지방세 부과처분에 적용
5) 2017년~2020년 귀속 지방세 및 지방세 부과처분에 적용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9-02

신고 또는 직권으로 매년 과세기준일(6. 1.) 현재 모든 재산을 조사하고, 과세대상 또는 비과세·감면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하고,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납세의무자별로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 ○○시는 재산세 부과를 위해 이 사건 토지들의 현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고, 과거 이 사건 토지들을 원고의 염(함수)제조업 시설에 포함시켜 제조업허가 등 공법상 조치를 하였고, 이후 염전사용폐지 신고를 수리한 이상, 이 사건 토지들이 염전의 부속시설 및 부지로 이용되다가 사용이 폐지된 폐염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이고, 이후 이 사건 토지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한 폐염전인 것은 명백하며, 피고 ○○시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해 재산세 등을 부과하기 전 관계 법령에 따라 현황을 조사하였더라면 이 사건 토지들이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함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원고가 초과납부한 재산세액이 다음 [표2] 기재와 같이 합계 37,647,110원, 초과납부한 지방교육세액이 합계 7,529,420원인 사실은 을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시는 37,647,1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피고 ○○도는 7,529,4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표2]

과세연도(년)	초과납부 재산세액(원)	초과납부 지방교육세액(원)
2017	11,365,300	2,273,060
2018	11,587,520	2,317,500
2019	7,196,260	1,439,250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9-02

2020	7,498,030	1,499,610
합계	37,647,110	7,529,420

4. 피고 ○○도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의 2017년도 납부분(2017. 9. 28. 및 2017. 11. 24. 납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원고가 피고 ○○도를 추가하는 내용의 피고경정 신청서를 제출한 2023. 8. 18.부터 역산하여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 ○○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2023. 8. 18. 이 법원에 피고 ○○도에 대한 피고경정 신청서가 제출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그로부터 역산하여 5년을 초과한 기간에 해당하는 2017년 귀속 지방교육세에 대한 초과납부액 2,273,060원 부분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도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

피고 ○○도는 원고에게 5,256,360원(= 7,529,420원 - 2,273,0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가. 피고 ○○시는 원고에게 초과납부 재산세액 합계 37,647,110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중 11,141,035원(2017년)에 대하여는 납부일 다음날인 2017. 11.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2. 12. 8.까지 별지1 적용이율란 기재 비율의, 11,363,143원(2018년)에 대하여는 같은 2018. 12. 4.부터 같은 2022. 12. 8.까지 별지1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9-02

적용이율란 기재 비율의, 6,981,906원(2019년)에 대하여는 같은 2019. 12. 3.부터 같은 2022. 12. 8.까지 별지1 적용이율란 기재 비율의, 7,282,730원(2020년)에 대하여는 같은 2020. 12. 8.부터 같은 2022. 12. 8.까지 별지1 적용이율란 기재 비율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도는 원고에게 초과납부 지방교육세액 합계 5,256,360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중 2,272,628원(2018년)에 대하여는 납부일 다음날인 2018. 12. 4.부터 이 사건 2023. 8. 18.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3. 9. 13.까지 별지1 기재 적용이율란 기재 비율의, 1,396,382원(2019년)에 대하여는 같은 2019. 12. 3.부터 같은 2023. 9. 13.까지 별지1 적용이율란 기재 비율의, 1,456,546원(2020년)에 대하여는 같은 2020. 12. 8.부터 같은 2023. 9. 13.까지 별지1 적용이율란 기재 비율의, 각 그 다음날부터 피고 ○○도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5. 9.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도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피고 ○○도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9-02

[별지1]

환급 가산금 이율

	기간	적용이율
1	2017. 11. 25. - 2018. 03. 18.	연 1.6 %
2	2018. 03. 19. - 2019. 03. 19.	연 1.8 %
3	2019. 03. 20. - 2020. 03. 12.	연 2.1 %
4	2020. 03. 13. - 2021. 03. 15.	연 1.8 %
5	2021. 03. 16. - 2023. 09. 13.	연 1.2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9-02

[별지2]

피고 ○○시에 대한 청구취지

(단위: 원)

과세기간 및 세목	부당이득금 원금(초과납부세액)	기간별 환급가산금 이율								
		2017. 11. 25.~	2018. 3. 19. ~	2018. 12. 4.~	2019. 3. 20.	2019. 12. 3.~	2020. 3. 13.~	2020. 12. 8.~	2021. 3. 16.~	2022. 12. 8.~
		2017년분 납부일 다음날	이율 개정	2018년분 납부일 다음날	이율 개정	2019년분 납부일 다음날	이율 개정	2020년분 납부일 다음날	이율 개정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
2017년분 재산세	11,141,035	연 1.6%	연 1.8%	연 1.8%	연 2.1%	연 2.1%	연 1.8%	연 1.8%	연 1.2%	연 12%
2018년분 재산세	11,363,143			연 1.8%	연 2.1%	연 2.1%	연 1.8%	연 1.8%	연 1.2%	연 12%
2019년분 재산세	6,981,906					연 2.1%	연 1.8%	연 1.8%	연 1.2%	연 12%
2020년분 재산세	7,282,730							연 1.8%	연 1.2%	연 12%

* 각 과세기간별 납부일 및 법령개정(아래 **참조)에 따른 기간별 환급가산금 이율을 구분한 것

** 지방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의 위임에 따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개정함에 따른 환급가산금 이율 변경을 반영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9-02

[별지3]

피고 ○○도에 대한 청구취지

(단위: 원)

과세기간 및 세목	부당이득금 원금(초과납부세액)	기간별 환급가산금 이율								
		2017. 11. 25.~	2018. 3. 19. ~	2018. 12. 4.~	2019. 3. 20.	2019. 12. 3.~	2020. 3. 13.~	2020. 12. 8.~	2021. 3. 16.~	2023. 9. 14.~
		2017년분 납부일 다음날	이율 개정	2018년분 납부일 다음날	이율 개정	2019년분 납부일 다음날	이율 개정	2020년분 납부일 다음날	이율 개정	[illegible]
2017년분 지방교육세	2,228,207	연 1.6%	연 1.8%	연 1.8%	연 2.1%	연 2.1%	연 1.8%	연 1.8%	연 1.2%	연 12%
2018년분 지방교육세	2,272,628			연 1.8%	연 2.1%	연 2.1%	연 1.8%	연 1.8%	연 1.2%	연 12%
2019년분 지방교육세	1,396,382					연 2.1%	연 1.8%	연 1.8%	연 1.2%	연 12%
2020년분 지방교육세	1,456,546							연 1.8%	연 1.2%	연 12%

* 각 과세기간별 납부일 및 법령개정(이래 **참조)에 따른 기간별 환급가산금 이율을 구분한 것

** 지방세기본법 제82조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의 위임에 따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개정됨에 따른 환급가산금 이율 변경을 반영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9-02

[별지4]

관련 법령

○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9-02

으로 정하는 토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16조(징수방법 등)

①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②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③ 재산세의 과세대상별 종합합산방법·별도합산방법, 세액산정 및 그 밖에 부과절차와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0호)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⑤ 법 제106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7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하며,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 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2.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계속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 다만, 염전 사용을 폐지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6. 12. 30. 행정자치부령 제104호)

제58조(재산세의 합산 및 세액산정 등)

법 제116조제3항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 조사, 과세대상별 합산방법, 세액산정, 그 밖의 부과절차와 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9-02

1.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의 신고 또는 직권으로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모든 재산을 조사하고, 과세대상 또는 비과세·감면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호에 따라 조사한 재산 중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납세의무자별로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3. 시장·군수·구청장은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59호서식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 재산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4. 제3호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한 장의 납세고지서로 발급하며, 토지 외의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하여 과세대상 물건마다 각각 한 장의 납세고지서로 발급하거나, 물건의 종류별로 한 장의 고지서로 발급할 수 있다.

○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가. 삭제 <2019.12.3>
 나. 삭제 <2019.12.3>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9-02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바. 에너지·자원의 공급 및 방송·통신·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⑥ 법 제106조제1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1.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계속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 다만, 염전 사용을 폐지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는 제외한다.